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1327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정극일, 상무균, 조정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129,892원 및 위 돈 중 3,870,133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11.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B는 2012. 4. 19. D(주)로부터 5,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4. 10. 27.,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D(주)는 2013. 12. 26.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E(주)에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주)는 2018. 10. 16.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20. 6. 18. 현재 14,129,892원(= 원금 3,870,133원 + 지연손해금 등 10,259,759원)이다.

2) B는 2012. 4. 19. 주식회사 F로부터 3,000,000원을 계약만료일 대출일로부터 3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F은 2014. 12. 12.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20. 6. 18. 현재 7,171,357원(= 원금 2,304,515원 + 지연손해금 등 4,866,842원)이다.

3) B는 2007. 9.경 주식회사 G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2. 7. 20.경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9. 4. 3.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 등의 원리금은 2020. 6. 18. 현재 26,790,387원(= 원금 10,547,667원 + 지연손해금 등 16,242,720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피고 C는 망 H과 혼인하여 피고 B를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두었다.
- 2) 망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0. 13. 사망하였다. 이에 망 H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C(상속지분 3/11)와 자녀 피고 B 등(각 상속지분 2/11)은 2019. 11. 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C는 2019. 11. 6.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의 원리금은 2020. 6. 18. 현재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14,129,892원(= 원금 3,870,133원 + 지연손해금 등 10,259,75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B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4,129,892원 및 위 돈 중 원금 3,870,133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정산일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앞서 본 약정연체이율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의 가. 1), 2), 3)항 기재 각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양수금채권의 합계액은 2020. 6. 18. 현재 48,091,636원(= 14,129,892원 + 7,171,357원 + 26,790,387원)임은 계산상 명백한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망 H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C와 피고 B를 포함한 총 4명의 자녀가 있었던 사실, 위 법정상속인들은 2019.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C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11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의 어머니이자 수익자인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가 평소 피고 C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어 선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11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부동산 목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 364.1㎡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백률초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지하 46.95㎡, 1층 163.15㎡, 2층 118.59㎡ 환.

